

의안번호	제 6-6 호	의 결 사 항
의 결 년 월 일	2000. 7.	

## 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

발의자	최상귀 의원 외 3인
발의년월일	2000. 7. 19.

# 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2000. 7. 19.  
발 의 자 : 최상귀 의원 외 3인

## 1. 제안이유

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별표중 전문위원별 직급의 위원회 명과 직위를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 행정기구인 총무사회국·산업건설국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의정과 시정과의 연계성을 기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별표 위원회 명중 “의회운영전문위원회”를 “의회운영위원회”로, “총무전문위원회”를 “총무사회위원회”로, “산업도시전문위원회”를 “산업건설위원회”로 개정
- 동별표 직위중 “총무전문위원”을 “총무사회전문위원”으로 “산업도시전문위원”을 “산업건설전문위원”으로 개정

## 3. 관계법규

- 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(제3조)
-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(제4조)

- 붙 임 : 1. 규칙안 1 부  
 2. 신구조문대비표 1 부  
 3. 관계법규 사본 1 부. 끝.

## 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

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 표】

**전문위원별 직급(제3조 관련)**

위 원 회 명	직 계	직 급
의회운영위원회	의회운영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지방 행정 주사
총무사회위원회	총무사회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지방 행정 주사
산업건설위원회	산업건설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지방 행정 주사

# 신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		개 정 안		
【 별 표 】 전문위원별직급(제3조관련)			【 별 표 】 전문위원별직급(제3조관련)		
위 원 회 명	직 위	직 급	위 원 회 명	직 위	직 급
의회운영 전문 위원회	(생 략)		의회운영 위 위원회	(현 행 과 같 음)	
총무전문 위원회	총무전문위원	(생 략)	총무사회 위원회	총무사회전문 위원회	(현행과같음)
산업도시 전문 위원회	산업도시전문 위원회	(생 략)	산업건설 위원회	산업건설전문 위원회	(현행과같음)

제1편 의회 제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

제천시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[ 1998. 9. 25 ]  
[ 규칙 제158호 ]

개정 1998. 12. 30 규칙 제172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제천시의회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조례(이하 "조례"라 한다)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무국장)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
2. 문서·보안·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
4. 의회경사시설,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
5. 의회경비 및 방청·참관·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
6.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
7.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
8. 의정보도자료 수집,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
9. 각종회의록 작성, 보관,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
10. 각종 의안의 접수, 인쇄, 배부, 이송 등 처리 종합
11. 의안 실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 연구
12. 청원·진정서의 접수, 분류 및 처리
13. 의결문서의 보존, 발간, 이송 등 처리 총괄
14. 기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

제3조(전문위원)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.

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.

1. 조례안, 예산안,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
2.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, 조사, 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
3.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
4.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
5. 위원회 주관 공청회, 세미나, 간담회 등 운영
6.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편 의회 재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

[별 표]

전문위원별직급(제3조관련)

위 원 회 명	직 위	직 급
의회 운영 전문위원회	의회 운영 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
총무 전문위원회	총무 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
산업 도시 전문위원회	산업 도시 전문위원	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주사

## 제3편 총무사회 제1장 자치행정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

##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[ 1996. 2. 16 ] [ 조례 제132호 ]

개정 1996. 3. 8	조례 제 181호
개정 1998. 12. 30	조례 제 352호
개정 1999. 6. 21	조례 제 383호
개정 1999. 9. 17	조례 제 411호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장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국장 및 과장, 담당관의 직급 등) ① 시 본청의 국장의 직급, 본청, 직속기관의 과장, 담당관 등 보조, 보좌기관의 직급과 과, 담당관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 
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, 사업소장의 직급,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제 2 장 시 본청

제3조(보좌기관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 기구로 기획담당관, 공보담당관을 둔다.

제4조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총무사회국, 산업건설국을 둔다.

제5조(총무사회국에 두는과) ① 총무사회국에 자치행정과, 건전생활체육과, 세정과, 회계과, 생활민원과, 사회복지과, 환경관리과를 둔다.

1. 의식 및 행사
2. 보안업무
3. 여론조사 및 여론의 시정 반영
4. 공무원 정현원 및 인사관리
5. 공무원의 임명, 표창, 징계, 소청
6. 의료보험, 연금
7. 공무원 복리후생 및 교육
8. 기구, 직제, 사무분장
9. 하급행정기관의 지도 감독
10. 행정구역에 관한 업무
11. 문서 수발 및 통제
12. 문서보존관리 및 공인관리
13. 인장업 및 국제협력 업무
14. 행정정보 공개운영
15. 상급기관의 감사수감과 처분요구사항 처리